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고용안전·노동전환 관련 사항 포함〉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16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고용안전·노동전환 관련 사항 포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3.

다. 회 부 일 : 2026.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고용안전·노동전환 관련 사항 포함 (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로봇과 결합한 피지컬 AI 등은 업무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과 병행하여 다수 직종에서 작업·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서비스로 대체되는 것 또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음.
 - KDI가 작성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¹⁾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미 38.8%에 달하고, 2030년 이후의 미래에는 현재 형태의 일자리의 약 90%에서 직무의 9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최근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실제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노동자단

1) 한요셉,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KDI, 2023

체나 언론 등에서는 반복적 제조 공정에서의 인력 대체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고용불안정 확대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이처럼,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활용한 자동화 설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직무 전환 부담, 숙련의 가치 하락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민의 고용안정·노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 발전이 고용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기술은 고용환경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고용안정의 약화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고용·노동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제2항제6호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²⁾하고 있는데,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개정안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문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2호³⁾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심의하므로 현재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고용·노동 정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으로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책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세부 영향 분야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은 입법효율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

대응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2. 고용노동부

인 입법의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